

상법개정안: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

-2023.11.23.자 최준선 교수의 칼럼에 대한 비판을 겸하여-

한국기업거버넌스 대상 시상식
2023년 12월 5일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이상훈 교수

CONTENTS



1. 상법 개정안의 내용
2. 칼럼의 내용
3. 칼럼 내용에 대한 분석(비판)
4. 상법 개정안의 기대효과

1. 법안의 내용

충실의무 상법 개정안(2022)

■ 이용우 의원 안

현 행	개 정 안
제382조의3(이사의 충실의무)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u>회사를</u>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제382조의3(이사의 충실의무) ----- ----- <u>주주의 비례적 이익과 회사를</u> -----.

■ 박주민 의원 안

현 행	개 정 안
제382조의3(이사의 충실의무)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u>회사를</u>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제382조의3(이사의 충실의무) ----- ----- <u>회사와 총주주를</u> -----.

상법 개정론이 대두된 배경

■ 주주이익은 회사의 이익과 구별 판례(에버랜드 등)

- 회사에만 손해가 없으면 주주가치 침해 행위에 법적 책임 x
- 예: 에버랜드 CB, 삼성물산 합병, LG화학 물적분할 상장 등등

■ 오랜 기간 통설, 판례 → 해석론 변경을 기대하긴 어려운 상황

■ 문제는 주주이익 침해에 달리 대안을 내 놓지 못하고 있다는 점

- 대안 제시없이 “조문”, “대륙법” 핑계로, 주주가치 이전·침해 외면

2. 칼럼의 내용

상법 개정안에 대한 비판

한국경제 2023.11.23.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시론] '주주의 비례적 이익' 이라는 현혹

<https://n.news.naver.com/article/015/0004917315?sid=110>

1. “회사이익 주주이익 구별- 듣도 보도 못한 논리”

“이들 법안에서 회사의 이익과 주주의 이익이 다르며, 양자의 관계가 등가(等價)라고 전제하는 발상부터 이해하기 어렵다. 회사는 주주의 이익을 위해 존재한다는 전통적 ‘주주 중심주의’(shareholder supremacy)와 다르고, 그 대척점에 있는 ‘이해관계자 자본주의’도 아닌, 듣도 보도 못한 논리이기 때문이다.”

2. “주주의 비례적 이익과 충실의무는 연결 x”

“지난 3월 서울동부지법의 ‘신주 및 전환사채 발행금지 가처분 결정’(주-SM의 카카오 앞 신주발행 件)에서 ‘주주의 비례적 이익 침해’라는 표현이 처음 등장했는데, 주식 등의 제3자 발행은 기존 주주의 이익을 침해하기 쉽기 때문에 주주의 비례적 이익이 중요한 것이다. 그러나 이는 이사의 충실의무와는 연결되지 않는다.”

3. “주주평등원칙 이미 존재- 개정안 불필요”

“주주의 비례적 이익은 회사법 최상위 이념인 ‘주주평등원칙’에 따라 보호받고 있다. ---대주주가 가진 1주식에 대해 1의결권이, 소액주주의 1주식에도 1의결권이 적용된다는 식이다. 모든 주식은 차별대우를 받지 않는다는 의미---이것이 바로 비례적 이익이다. 이것이 아니라면 주식을 조금 가진 소액주주를 우대해야 한다는 말이 되며, 이는 자본주의 원리가 아니다.”

4. 미국도 양자를 구분하지는 않음

“미국의 일부 주 회사법과 판례에서 이사의 ‘신인의무’(fiduciary duty) 대상으로 ‘회사 및 주주’라는 표현을 쓰고 있긴 하다. 이는 ‘주주 중심주의’ 아래 회사에 이익이 되면 주주에게도 이익이 된다는 일반론적 문구 일 뿐, 회사와 주주의 이익을 구분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다.”

5. 일본, 영국도 주주의 비례적 이익 개념 없음

“일본 회사법 제355조는 한국과 조문 구성이 비슷한데, 일본과 한국 모두 미국 회사법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이다. 영국의 고등법원도 최근 ‘이사의 지위 자체만으로는 주주에게 충실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판시했다. 이처럼 이사의 의무와 관련해 3국 회사법은 내용상 차이가 거의 없다. 오히려 이사의 충실의무와 관련한 ‘주주의 비례적 이익’이라는 문구나 개념은 외국법에 없다.”

6. 상법개정안 실익 없음(종전과 차이 없음)

“두 의원이 발의한 법안처럼 상법이 개정돼도 해석상 종전과 아무런 차이가 없다.”

7. 소액투자자 현혹, 경영에 혼란만 초래

“민주당 두 의원의 ‘상법 개정안’은 망가진 상법을 더욱 망가뜨리고 개인 소액투자자들을 현혹할 수 있다. 이사의 행동 기준에 모호성을 가져오는 개정은 경영에 혼란만 일으킬 뿐이다.”

3. 칼럼 내용 분석(비판)

(1) “상법개정안 – 듣보잡”?

1. "회사이익 주주이익 구별- 듣도 보도 못한 논리"

- 충실의무 관련, 회사와 주주 구별은 정부 주요 기관이 모두 인정한 사항
 - 법원
 - 국회
 - 법무부
 - 법무부 장관
 - 금융위

판례: 선관의무에 주주보호 의무는 없다

- 에버랜드(대법 2009. 5. 29. 2007도4949 전합)
 - 이사가 주식회사의 지배권을 기존 주주의 의사에 반하여 제3자에게 이전하는 것은 기존 주주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일 뿐
 - 지배권의 객체인 주식회사의 이익을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 주식회사의 이사는 주식회사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 할 수 있지만
 - 주식회사와 별개인 주주들에 대한 관계에서 직접 그들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는 것은 아니[다],
- ⇒ 지배권 이전과 관련하여 이사에게 임무위배가 없다.

판례: 선관의무에 주주보호 의무는 없다

■ Leading Case: 대법원 2004. 5. 13. 선고 2002도7340

⇒ 가장납입은 주주들의 손실문제, 회사의 손실은 x, 따라서 선관의무 x

■ 대표이사가 일반 주주들에 대하여 그들의 신주인수권과 기존 주식의 가치를 보존하는 임무를 대행한다거나 주주의 재산보전 행위에 협력하는 자로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는 볼 수 없다, ---

■ 기존 주식의 가치가 감소하게 될 수는 있으나---이는 업무상 배임죄에서의 재산상 손해에 해당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 따라서 --- 기존 주주에 대한 업무상배임죄를 구성한다고 할 수 없다.

판례: “선관의무에 주주보호는 미국 얘기”

■ 삼성물산 합병(서울중앙2017.10.19.2016가합510827)

- ⑦ ‘미국을 포함한 선진국에서는 지배주주와의 이해상충형 합병에 관하여 이사회가 선관주의의무에 더하여 **절차적 공정성을 담보할 의무**…이사회가 그 의무를 다하지 않아 **절차적 공정성을 침해하였다**’ 주장
- 위 ⑦ 주장의 경우 **상법상 인정되는 선관주의의무 및 충실의무 외에 미국 등에서 논의되는 이사들의 주의의무의 존재를 전제로 한 주장**…**제소기간** **도과 후 주장된 새로운 무효사유**에 해당..그 자체로 이유 없다

판례가 주주이익을 인정하지 않는 이유

- 대판 2010.10.28.2010다51413; 대판2016.7.22.2015다66397;
대결 2001. 2. 28. 2000마7839 등:

- “주식회사의 주주는 주식의 소유자로서 회사의 경영에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회사의 재산관계에 대하여는 단순히 사실상·경제상 또는 일반적·추상적인 이해관계만을 가질 뿐 구체적 또는 법률상의 이해관계를 가진다고는 할 수 없고, (중략) 일정한 요건에 따라 이사를 상대로 그 이사의 행위에 대하여 유지(留止)청구권을 행사하여 그 행위를 유지(留止)시키거나 또는 대표소송에 의하여 그 책임을 추궁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을 뿐”

주주이익 회사이익 구별 - 국회

■ 국회 법사위 법안 심사 자료(2023.7.1. 법안심사 1소위)

- “개정안에서는 이사에게 직접 계약관계가 없는 상대방(주주)에 대한 충실의무를 부과
- ---- 대법원은 이사의 선관의무와 충실의무가 회사와의 위임계약에 기초----
- ----이사가 주주와의 관계에서 직접 그들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

주주이익 회사이익 구별 - 법무부

- 국회 법사위 법안 심사 자료(2023.7.1. 법안심사 1소위)
 - “관계기관 의견(법무부)
 - -----이사의 회사에 대한 선관·충실의무를 전제한 현행법체계
 - ----- 회사에 대하여만 인정되는 이사의 선관의무
 - ----- 상법은 기본적으로 독일·프랑스 등 대륙법계
 - ----- 대륙법계 국가의 경우 이사의 주주에 대한 의무 불인정.”

주주이익 회사이익 구별 - 한동훈 법무부 장관

“저도 이런 종류의 사건을 많이 해 봤는데요. 우리나라가 특히 2000년
대 중반에 있었던 에버랜드 CB사건 이후에는 **주주 중심이 아니라 회
사 중심으로 피해자를 봐야** 하는 구성만 배임죄로 성공할 수 있는 구
도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실상 주주에 대한 책임이지만 그걸
법리 구성을 해서 **회사를 피해자로 하는 식으로 치환해서 처벌** 가능한
경우가 상당히 있고요. 다만 --- **대륙법계에서는 이 부분이 없습니다**”
(이용우 의원의 대정부 질의에 대한 답변 중)

주주이익 회사이익 구별 - 금융위원회

“미국의 경우 우리 상법과 달리 이사회는 회사 외에, 주주에 대해서도
충실의무 부담”

(2022.12.21.자 의무공개매수 관련 보도자료)

“상법개정 듣보잡·무용론”의 함의

■ 상법 개정 반대론의 주요 논거 중의 하나

- 회사이익과 주주이익 동일하며 판례도 양자를 구별하지 않는다(기존 판례는 형사판결일 뿐), 따라서 상법 개정 불필요, 부적절(서울대 천경훈 교수)
- 주주보호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주주들의 주총 불참, 소 제기 저조 등 권리 행사 미흡 때문이지 상법 때문이 아니다(서울대 송옥렬 교수)

→ 상법 개정론의 전제 자체를 부정, 추가적인 논의 진전을 불가하게 만드는 의미

→ ‘학문적 기득권 옹호론’

- ① 실무에서 모두가 인정하는 사항(주주/회사 이익 구별론)을 부정
- ② ‘필요없다’ 외에, 개정하면 안되는 이유가 무엇인지는 제시 못함(대륙법?)
- ③ 주주이익 침해 현실 외면, 법리적 대안 제시 부재(자본거래 개념 부지)
- ④ 미국과 조문 차이에 외면,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 인정국가는 없다" 잘못된 주장

2. “주주의 비례적 이익과 충실의무는 연결 x”

- “서울동부지법의 ‘신주 및 전환사채 발행금지 가처분 결정’에서 ‘주주의 비례적 이익 침해’라는 표현이 처음 등장-- 이사의 충실의무와는 연결되지 않는다.”
 - 양자를 연결시켜 주주이익을 보호하자는 것이 개정안의 취지이므로 합당한 주장으로 보기 어려움

**(2) “‘주주평등원칙’ 있으니
상법개정 필요없다”?**

3. “주주평등원칙 이미 존재- 개정안 불필요”?

■ 주주평등원칙의 개념과 한계

- 주주는 회사와의 법률관계에서는 그가 가진 주식의 수에 따라 평등한 취급(대판2018.9.13.2018다9920, 9937)
- 한계: 개념의 다의성과 모호성 - 문제해결능력 ↓
 - 영미에선 ‘주주평등원칙’ 사용 x, 충실의무로 대응

3. “주주평등원칙 이미 존재- 개정안 불필요”?

■ “주주의 비례적 이익”보다 못한 이유: 이익 침해금지·증진 개념 x

- 모든 주주의 이익을 ‘**평등하게**’ 침해하는 경우
예: 합병비율 불공정, 물적분할, 주식병합 등

- **회사가 둘 이상 등장**하는 총수(지배주주)의 **이해상충 행위**

➤ 예: 총수지분을 높은 회사와 낮은 회사 사이 합병, 부당지원 등 거래행위

→ 주주평등은 1개 회사 내부에만 적용 → 총수의 이해상충 통제 x

- **구체적 개별규정 보다 하위**

cf. 충실의무는 최상위 원칙

참고) 주주평등원칙의 한계 사례(판례)

■ 합병비율 불공정(삼성물산 합병)

- 원고: 대주주의 경영권 승계 목적으로 주주평등원칙에 반한다고 주장
- 법원(1,2심): 승계목적 소명 부족하고, 회사의 입장에서 이익 추진
-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라면?
 - 총수와 전체(일반)주주의 이해상충 사안이므로,
 - 경영진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 발동
 - 이해상충 해소 의무, 주주 위한 대안탐색의무
 - 공정성 입증책임도 경영진
- 현행 ‘회사에 대한 충실의무’로는 ‘주주간 이해상충’ 개념 도출 x

참고) 주주평등원칙의 한계 사례(판례)

■ 자기주식 처분 행위(삼성물산 합병)

- 원고: ① “특정주주에게 매도는 주주평등원칙 위반” 주장
② “주주의 비례적 의결권가치 침해는 주주평등원칙 위반” 주장
- 법원(1,2심): ① 주주의 의결권 이익 제한 인정되나, 사실상의 이익
② 법에 자기주식 처분을 금지하는 규정이 없다
-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라면?
 - 총수와 일반주주의 이해상충 사안,
 - 회사 재산을 활용한 의결권 비례가치 침해행위
→ 명문 규정 없어도 위법

참고) 합병비율 불공정: 회사이익 vs 주주이익

■ 이재용 회장 최후 변론(2023.11.17.)의 법적 함의

- “합병은 두 회사 모두에게 도움이 될 것”
- “두 회사의 합병과 관련해서 저 개인의 이익을 염두에 둔 적이 없다”
- “더욱이 제 지분을 늘리기 위해 다른 주주 분들에게 피해를 입힌다는 생각은 맹세코 상상조차 한 적이 없다”

■ SH's Commen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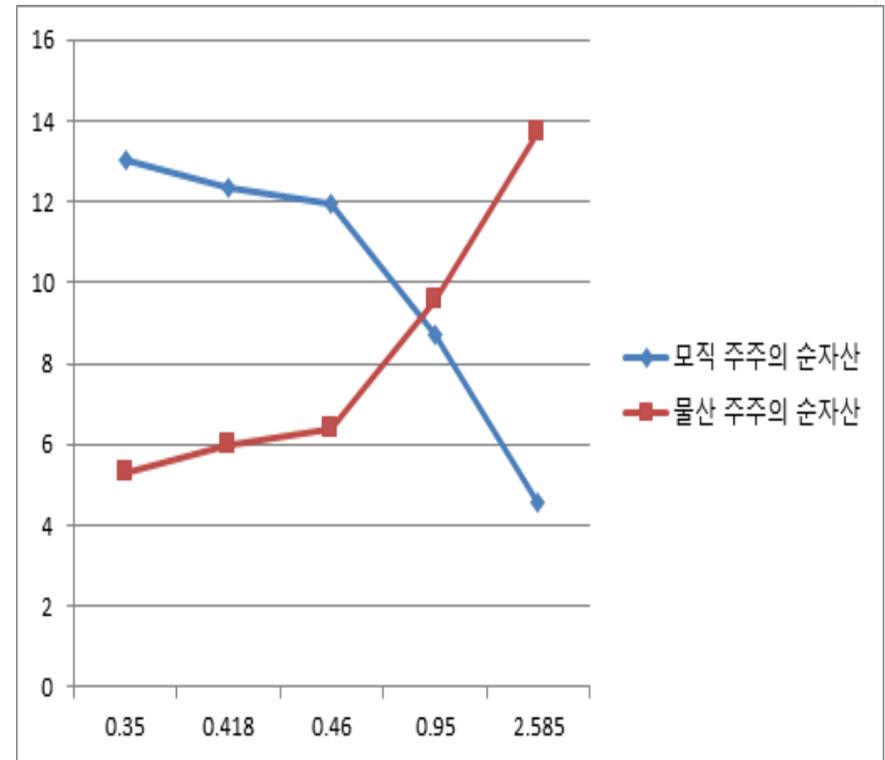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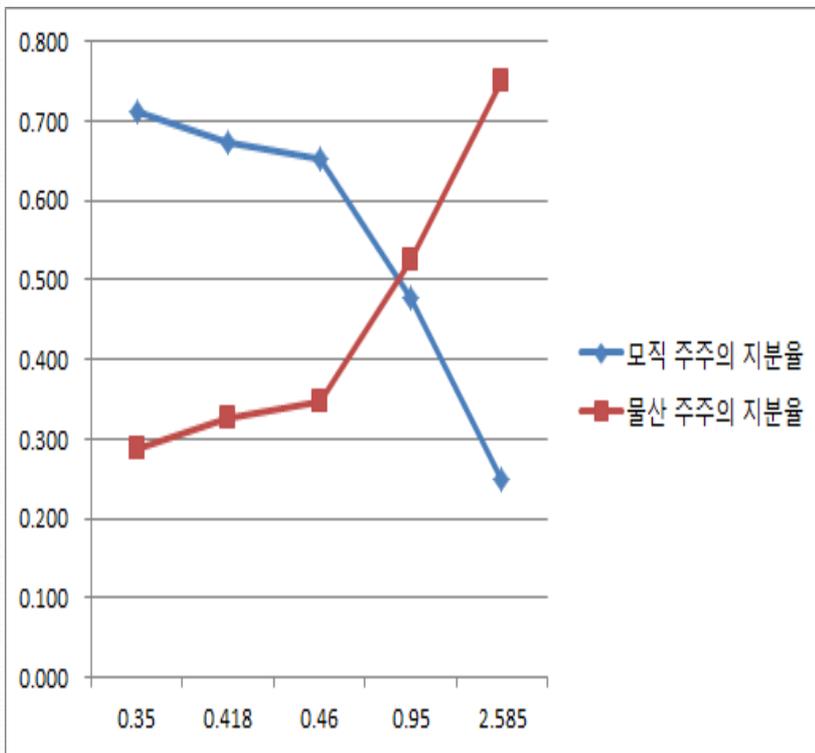
- 회사 중심 충실의무 관점: “회사에 이익이면 된 것 아닌가”
-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 관점 결여: “주주에 대한 이해상충 몰랐다”
-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라면?
 - 일반주주의 지분율 편취 이해상충 처음부터 내재 → 해소의무
 - ‘염두에 두지 않았고’ ‘상상하지 않았다’는 변명 불가

참고) 합병비율 '불공정'의 의미 예시

A. 합병 비율	B. 모직 주식수	C. 물산 주식수	D. 신주 (=A x C)	E. 통합 주식수 (=B+D)	F. 모직 주주의 지분율(=B/E)	G. 물산 주주의 지분율 (=D/E)	F. 지배주주 지분율·순자산
0.35	135,000,000	156,217,764	54,676,217	189,676,217	0.712 13조	0.288 5.2조	0.304 5.53조
0.418 (주식매수 2심)			65,299,025	200,299,025	0.674 12.3조	0.326 5.9조	0.289 5.3조
0.46 (NPS)			71,860,171	206,860,171	0.653 11.9조	0.347 6.3조	0.280 5.1조
0.95 (ISS)			148,406,876	283,406,876	0.476 8.7조	0.524 9.5조	0.208 3.8조
2.585 (순자산)			403,822,920	538,822,920	0.251 4.6조	0.749 13.6조	0.116 2.1조

참고) 합병비율 불공정과 지배주주의 이해상충

■ 모직과 물산의 주주간 이해상충(지분율과 순자산)



참고) 주주평등원칙의 한계 사례

■ LG화학 - LG엔솔 물적분할 상장

- 법 규정에 따른 처리이므로 주주평등원칙으로는 문제삼기 어려움
- LG화학이라는 회사엔 손해가 없으므로 회사에 대한 충실의무로는 문제삼기 어려움(회사의 자산, 부채, 영업력에 아무 영향x)
-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라면? : 지배주주와 전체(일반)주주의 이해상충 사안 (일반주주의 가치 희석 vs. 지배주주의 레버리지 이익↑) → 경영진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 발동 → 이해상충 해소·대안탐색 의무

■ 주식병합(울트라건설 - 대판 2020. 11. 26. 선고 2018다283315)

- 96% 대주주가 10,000: 1의 주식병합으로 143주 보유 소수주주 축출
- 주주평등원칙 위반 여부가 쟁점이었으나, 대법원은 모든 주주에게 동일한 조건이라는 이유로 위법 아니라고 판단

(3) “외국도 입법례가 없다”?

4. 미국도 회사와 주주를 구분하지 않는다?

■ 델라웨어 주 회사법 제 102조 (정관의 내용)

(b) (7) 이사로서의 신인의무(fiduciary duty)를 위반하여 발생한 금전적인 손해에 관하여 **회사 또는 회사의 주주에 대한 이사의 책임** 감면에 관한 규정을 둘 수 있으나 다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i) **회사 또는 회사의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의무(duty of loyalty)**의 위반의 경우

■ 모범회사법 § 8.30 이사의 행동 기준

(a) 이사회는 각 구성원은 이사의 직무를 수행할 때, (i) 성실하게, 그리고 (ii) 이사가 **회사의 최선의 이익**이라고 합리적으로 믿는 방식으로 행동해야 한다.

§ 8.31. 이사의 책임의 기준

(a)(2)(v) 이사의 행동이 “이사가 **회사 및 그 주주를 공정하게 대할 의무**”를 위반한 것인 경우, 또는 그 위반의 결과인 경우에는, 이사는 관련 법에 따라 소송이 가능한 바에 따라 **“회사 또는 주주”에게 책임을 진다.**

5. 영국도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 부정한다?

“영국의 고등법원도 최근 ‘이사의 지위 자체만으로는 주주에게 충실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판시했다”

❖ 비판) 판례 원문을 발췌·축소 번역하여 원 뜻을 왜곡
원문 - 위 문장에 바로 뒤이어 다음 문장 등장

“그와 동등하게(Equally), 일정한 상황에서는 이사가 주주에 대해서 직접 의무를 부담할 수 있다는 것이 확립된 판례법이다.”

5. 영국도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 부정한다?

❖ 판례 원문 계속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의무를 부담함이 원칙이지만, 이사가 주주의
주식을 양수도하는 경우와 같은 특별한 상황에서는 주주에 대한 의무
가 발생하며, 주주의 비용으로 이사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여서는 안 될
의무가 발생한다”

5. 영국도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 부정한다?

❖ 판례 원문 계속

“이사가 주주에 대해 직접 의무(fiduciary duty)를 부담하는 특별한 상황에 다음 세 가지가 포함된다:

③ 주주에겐 권한이 없고 이사에게 권한이 부여되어 있는 경우

--- 이사에게 주주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재량권을 부여

--- 때문에 주주들은 이사의 그러한 **직책상의 권한 남용에 매우 취약한 상태** (vulnerable)

---- **그러한 권한 행사 사안이야 말로 신인관계가 성립하는 확실한 증표**이다.

참고)주주에 대한 충실의무는 법의 일반원칙

❖ 참고) 민법 제734조(사무관리)

- ① 의무없이 타인을 위하여 사무를 관리하는 자는 그 사무의 성질에 좇아 가장 본인에게 이익되는 방법으로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 ② 관리자가 본인의 의사를 알거나 알 수 있는 때에는 그 의사에 적합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 ③ 관리자가 전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사무를 관리한 경우에는 과실없는 때에도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그 관리행위가 공공의 이익에 적합한 때에는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배상할 책임이 없다.

5. 영국도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 부정한다?

■ 영국 회사법 제172조 제1항 회사의 성공 촉진의무

- **회사의 이사는 전체로서의 주주의 이익을 위하여** 회사의 성공을 가장 촉진할 것이라고 성실히 생각하는 방법으로 **행위 하여야** 하며, 이때 (다른 것들보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 일본

- **한국과 조문 같으나 해석론상 자본거래엔 이사의 주주에 대한 의무 인정**

4. 상법개정의 기대효과

6. 상법 개정에도 종전과 차이 없다?

■ 상법 개정(주주에 대한 충실의무)의 기대효과

1) 회사엔 영향 없지만 주주이익 침해하는 행위 금지

- 자본거래(발행, 합병, 분할, 교환, 병합, 지주사설립, 자사주매매, 지배주주의 공개매수 등) 통한 주주가치 이전·침해 금지

2) 총수-일반주주간 이해상충 탐지 및 해소 의무 부과

- “회사만 위했을 뿐, 주주 피해는 생각 못했다” 변명 금지
- “총수에게 유리한 면 있지만 회사 전체 위한 것” 변명 금지
- 미리 주주에 대한 이해상충 탐지, 해소절차 구축할 의무(델라웨어)
 - 예: 이사회 3% 이상의 동의 및/또는 주총 MoM

❖ 참고: 이해상충 이사(disinterested director)- 총수에게 재무적 직업적 의존도 포함

6. 상법 개정돼도 종전과 차이 없다?

3) 입증(증명)책임 전환 효과

- 현재: 주주보호 의무 없음이 원칙 → 따라서 문제제기하는 사람이 무슨 의무위반인지, 손해가 무엇인지 주장 입증해야
- 법 개정되면: 주주보호 의무가 원칙 → 총수의 주주전체에 대한 이해상충 해소 불이행 확인되면 충실의무 위반 추정 → 의무위반 아님, 손해 없음을 경영진이 입증해야

6. 상법 개정돼도 종전과 차이 없다?

4) 손해 산정의 방법, 평가방법이 달라짐

- 현재: 주주보호 의무 없음 → 따라서 가치평가에 이해상충 개념 x, 회사가 산정한 가치 평가에 아무 문제 없음, 시장주가도 무방
- 법 개정되면: **총수의 이해상충 미해소 상태에서 시장주가, 가치평가는 위법, 신뢰 불가(=이해상충 미해소, 쌍방대리 의사결정이기 때문)**
 - 오염이 없었더라면 형성되었을 전체 주주가치의 n분의1을 기준 산정(미국 델라웨어/모범회사법)
- ❖ 참고: 미국은 이해상충거래(모범회사법), 축출 거래(델라웨어)일 땐 상장회사도 주식매수청구권 인정(시장주가 아닌 프리미엄 포함 전체 기업가치 n분의1)

6. 상법 개정돼도 종전과 차이 없다?

5) 주주에게 직접 청구권 인정

- 현재: 주주보호 의무 없음 → 따라서 주주가치 침해해도 주주는 소송 불가(청구권 없음) → 사안별로 규정이 있어야만 권리 주장이 가능
- 법 개정되면: 총수의 이해상충, 주주가치 침해행위에 대해 주주에게 일반적인 소송권 인정 효과(가처분, 손해배상)

총수의 이해상충이 문제인 이유 - 쌍방대리

■ 일반주주와 총수 사이의 이해상충 의사결정을 자신이 결정

- 민법 제124조(자기계약, 쌍방대리) 대리인은 본인의 허락이 없으면 본인을 위하여 자기와 법률행위를 하거나 동일한 법률행위에 관하여 당사자쌍방을 대리하지 못한다. → 이해상충자의 의사결정은 법의 일반원칙 위배
- 시가 오염 가능성 - 배당/공시/재무수치 통제권
 - 지배주주의 이해상충 미 해소 상태에서 시장주가 오염 가능성
- 의사결정 왜곡(자기거래 실질) 가능성
 - 이사회, 주총 - 계열사간 거래, 지배주주가 장악 쌍방대리 구조
 - ⇒ “사과 한 개를 둘이 나누어 갖는 합리적인 방법?”

“상법개정하면 혼란 초래”?

7. 소액투자자 현혹, 경영에 혼란만 초래?

“민주당 두 의원의 ‘상법 개정안’은 망가진 상법을 더욱 망가뜨리고 개인 소액투자자들을 현혹할 수 있다. 이사의 행동 기준에 모호성을 가져오는 개정은 경영에 혼란만 일으킬 뿐이다.”

- ❖ 회사 이익과 주주 이익이 일치할 때는 경영판단의 영역 - 현실에선 문제 안됨
- ❖ 문제되는 경우는 양자가 분리될 때이고 분리될 때는 거의 총수의 이해상충일 때임
 - 총수의 이해상충, 사익추구만 없으면 본 조항이 발동될 일이 없음
 - “이사 행동기준 모호론”은 비현실적인 기우 or 반대를 위한 반대

THE END